

홍수통제소 공무원(연구직)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

2024년도 환경부 홍수통제소 국가공무원(연구직)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최종 합격자 명단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최종합격자(응시번호)
101	시설연구사	낙동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부산광역시)	101005
102	시설연구사	금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충청남도 공주시)	102009
103	시설연구사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광주광역시)	103003

2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

가. 등록대상 : 최종합격자 3명

나. 등록기간 : 2024. 5. 7.(화) ~ 2024. 5. 13.(월)

다. 등록방법 : 아래의 구비서류를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등록기간 마감일 18:00까지 등기우편 제출(등록기간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주소: (06501)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한강홍수통제소 4층 운영지원과
- 방문접수는 근무시간인 09:00부터 18:00까지 접수 가능

라. 구비서류(원본) ※ 모든 증명서는 단면 작성, 주민등록번호 전부가 공개되도록 발급

①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 1) 각 2부.

② 기본증명서(상세)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발급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⑥ 혼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⑦ 학력(졸업)증명서(재학 중인 경우는 재학증명서) 1부.

※ 석사 이상 모든 학위증명서

⑧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붙임 2) 1부.

※ 전문의 소견서(붙임2-1)는 신체검사 결과가 판정보류인 경우만 재검사를 통해 제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검사에서 발급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발급예상 일자를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은 후 제출(「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제1항에 의한 의료기관 발행하되, 각각의 검사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⑨ 명함판(5×7) 1장, 반명함판(3.5×4.5) 사진 1장 및 jpg 파일(별도 제출)

※ 사진 스캔파일(jpg파일)은 별도로 **'24. 5. 9.(목)까지** 담당자 이메일 주소(jslee13@koreakr)로 **제출**

⑩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⑪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붙임3)

⑫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1부

※ 전자후견등기시스템을 통해 발급 가능

⑬ 기타(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하지 않은 기타 면허증 및 자격증 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안내사항

- 가. 정해진 기한 내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최종합격자에 대한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 최종합격자 중 채용후보자 등록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포기서(붙임4)를 작성하여 2024. 5. 9.(목)까지 위 담당자 이메일로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임용 당일 퇴직,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등 결원이 발생한 경우
- 마. 문의사항 연락처: 한강홍수통제소 운영지원과 02) 590-9914

신 원 진 술 서

※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각 '□'칸에는 해당 사항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 사 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 · (3.5cm×4.5cm)
등록기준지					
주민등록지					
실거주지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연 락 처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 가족은 사실혼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가족 관계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및 직 책	거 주 지
부모 · 배우자 · 자녀					
* 해당 가족 구성원이 서식의 항목보다 많은 경우 별도 서류를 첨부합니다.					
배우자 부모					
국 적	본 인	가 족			
		배우자	자녀(성명)	자녀(성명)	자녀(성명)
	<input type="checkbox"/> 대한민국 <input type="checkbox"/> 복수국적 <input type="checkbox"/> 외국국적				
복수국적 또는 외국국적의 취득 경위	* 대한민국 국적 이외에 다른 나라의 국적을 보유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재 산	본인 및 배우자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미혼 자녀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정당·사회 단체 활동	<input type="checkbox"/> 없음	단 체 명		기 간	직 책		
	<input type="checkbox"/> 있음			. . ~ . .			
				. . ~ . .			
병 역	본 인	군 종	병 과	최종 계급	기 간	미필 사유	
					. . ~ . .		
	자녀(성명)				. . ~ . .		
	자녀(성명)				. . ~ . .		
학 력	학 교 명		기 간		전공 학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학교는 고등학교부터 기재하고, '학위'란은 (전문)학사·석사·박사 또는 졸업·중퇴·수료 등으로 기재합니다.							
경 력 · 겸직 사항	기관 또는 업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별 관계(일자)	
			. . ~ . .				
			. . ~ . .				
			. . ~ . .				
자격·면허							
해외 거주 이력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 ~ . .				
			. . ~ . .				
북한 거주 친족	관계	성 명	직업·직책		생년 및 거주지	지득 경위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국가공무원 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은 공직임용에 있어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가족 포함)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 본인 및 가족 동의(자녀는 결혼·해외거주 등에 불문하고, 미성년은 본인대리 서명 가능)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본인			자필서명	자필 서명
배우자			자필서명	해당없음
자녀			자필서명	해당없음
자녀			자필서명	해당없음
자녀			자필서명	해당없음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 (밑줄은 민감정보)

본 인(예시)	가 족(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 공무원인사기록(행자부·인사처) ■ 주민·범죄경력·수사·수배 조회자료(경찰청)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기무사) ■ 금융기관 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행자부)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기무사) ■ 금융기관 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한강홍수통제소장 귀하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구 분	② 시험실시 기관	③ 응시직명	④ 응시번호	⑤ 성 명	사 진 (3.5cm × 4.5cm) ※ 압인 또는 계인
⑥ 검사 시					
⑦ 재 사용				⑧ 주민등록번호	

검 사 내 용

키	cm	체 중	kg
허리둘레	cm	혈 압	
(교정)시력	좌: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우: ()		
종 양 질 환		이 비 인 후 질 환	
호 흡 기 질 환		심 혈 관 질 환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신장/비뇨기계질환	
내 분 비 질 환		혈 액 질 환	
신 경 질 환		피 부 질 환	
근골격계 질환		안 질 환	
정 신 질 환		흉부 X선 검사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 결과	[]합 격	합격 사유	
합격 여부	[]판 정 보 류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도장을 눌러 찍음) 또는 계인(걸침도장)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추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나. 임신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신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 '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